

알기쉬운 호주제 폐지

차별의 굴레를 벗고 평등의 시대로 ~

박소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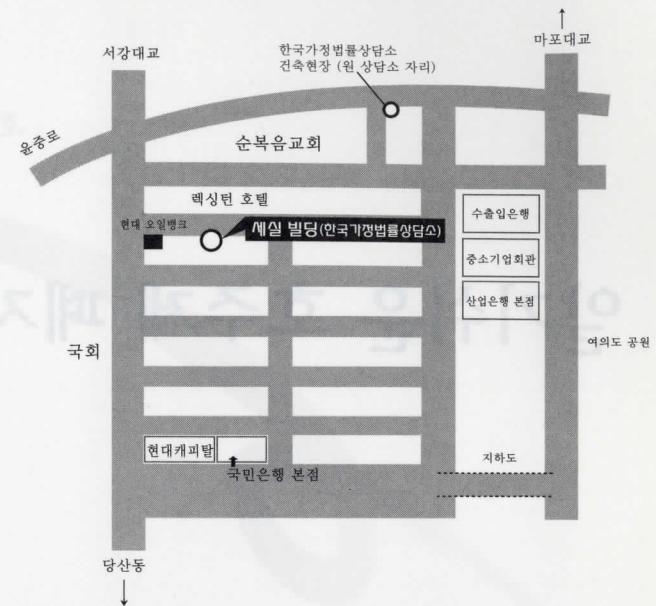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호주제 폐지

알기쉬운 호주제 폐지

호주제가 폐지되면 4 / 알기 쉬운 호주제 폐지 7
호주제 폐지 운동의 과정 14 / 民法 一部改正法律案 · 24





버스 국회의사당 앞 정류장 하차
 간선버스(파랑) 263, 360, 461, 600
 지선버스(초록) 5615, 5618, 6621, 6623, 6633

지하철 5호선 여의도역 4번 출구, 461번 국회의사당 앞 하차
 국회의사당 정류장에서 하차 후 현대오일뱅크 주유소를 끼고
 골목으로 진입, 세실 2 빌딩

지부연락처

강릉지부	(033)646-9556	익산지부	(063)851-0265
거제지부	(055)687-7869	인천지부	(032)438-1113
광주지부	(062)527-0011	전주지부	(063)244-2930
군산지부	(063)442-1560	정읍지부	(063)535-3705
대구지부	(053)745-4501	제주지부	(064)753-9421~4
대전지부	(042)520-5258	진주시부	(055)746-7988
동해지부	(033)535-0188	춘천지부	(033)257-4688
목포지부	(061)273-2514	태백지부	(033)554-4003
부천지부	(032)667-2314	평택·안성지부	(031)611-4251
청주지부	(043)257-0088	동두천지부	(031)866-0009
수원지부	(031)243-4556	구리·남양주시부	(031)551-9976
성남지부	(031)707-6661	창원·마산지부	(055)261-0280
신당동지부	(02)2238-6554	천안지부	(041)577-3680
안동지부	(054)856-4200	부평지부	(032)514-1112
울산지부	(052)246-9568	순천지부	(061)753-9900
원주지부	(033)731-4366		

호주제가 폐지되었습니다
 1956년 문을 연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창설 이후 가족법개정운동에 나선지,
 50여년 만에 이룩한 쾌거입니다.

호주제 폐지는
 양성평등과 부부평등을 실현하는 근원으로서
 앞으로 우리는 평등에 기초한, 사랑과 신뢰 가득한
 가정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성이 무엇을 획득했거나 승리한 것이 아니고
 남성이 무엇을 빼앗기거나 패배한 것이 아닙니다

민주 사회의 기틀이 될
 평등하고 자유로운 가족의 꿈을 그리게 된 것입니다

오는 2008년부터 호주제 없는
 새로운 민법이 시행됩니다
 창설 이래로 반세기의 역사 동안
 가족법개정운동에 헌신해 온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역사적인 호주제 폐지와 그 참 뜻을 널리 알려
 호주제 폐지가 가져올 사회적 변화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2005년 3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호주제 폐지를 담은 민법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로써 1958년 민법 제정 당시부터 논란이 되어왔던 호주제는 앞으로 2년 반 정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8년 1월 1일부로 폐지되게 되었다.

국회는 0 날 재적 296명 가운데 235명0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161, 반대 58, 기권 16표로 개정안을 가결했다.

호주제가 폐지되면

첫째, 양성평등 부부평등에 입각한 가족제도를 마련할 기반이 된다
특히 법적으로 여성을 차별해 왔던 법과 제도가 사라짐으로써 여성 인권이 회복되고 수직적이고 차별적인 가족관계에서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관계, 혼인관계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

둘째, 이는 곧 “혼인과 가정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는 헌법 제36조 제1항이 구체적으로 실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따라서 가족의 범위가 현실적이 되고, 양성평등이 실현될 것이다 즉 호주제가 존치하던 경우 호주를 기준으로 가족이 규정되지만, 호주제가 폐지되면 본인을 기준으로 가족이 규정되므로 가족의 범위가 현실적으로 규정되고 양성평등하게 정해진다는 것이다



넷째, 사회 변화에 따른 다양한 가족관계를 수용 가능하게 되어 가족의 범위가 확대된다 부적절하게 정상 가족과 비정상 가족을 구분하는 사회적 통념이 바로잡아 지게 되어 사회 변화에 따른 필연적 산물인 다양한 가족관계를 비정상이라 치부하던 그릇된 가치관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지난 1956년 우리 나라 최초의 법률구조기관으로 문을 연 이후 가정문제에 관한 전문상담기관으로서 현장에서 얻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반세기 동안 민법(가족법)개정운동을 주도하며 헌신해온 본 상담소로서는 1958, 1977, 1989년 세 차례에 걸친 가족법 개정이라는 결실에 이어, 양성평등과 부부평등이라는 이념을 실현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어 온 호주제를 폐지하는 커다란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었다는데 자부심을 느끼며, 이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보다 내용적으로 성숙된 민법개정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민법중개정법률안(대안)은 호주제 폐지 및 친양자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여, 마침내 우리 민법 제36조 제1항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는 내용을 실현하게 된 것이다.

민법중개정법률안은

첫째, 호주에 관한 규정 및 호주제도를 전제로 한 규정을 모두 삭제하도록 (안 제799조) 하였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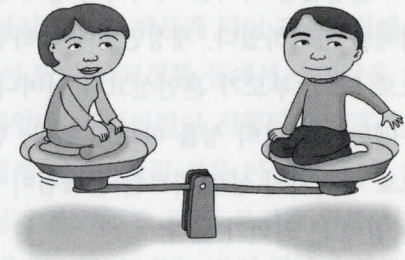
둘째, 양친과 양자를 친생자관계로 인정하며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는 친양자제도를 신설하였다(안 제908조의 2 내지 제908조의 8 신설). 또한 친권의 행사에 있어 자의 복리를 우선으로 한다는 의무규정을 신설하여 (안 제912조 신설) 합리적인 가족관계와 미성년자녀의 복리를 확실하게 보장하는 길을 열고 있다

다음으로 자녀의 성과 본은 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신고 시 부모의 협의에 의해 모의 성과 본도 따를 수 있도록 하였고(안 제781조 제1항),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부 또는 모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안 제781조 제6항). 그리고 동성동본금혼제도를 폐지하고 근친혼금지제도로 전환하였으며 (안 제809조), 여성에 대한 재혼금지기간 규정을 삭제하였다(현행 제811조 삭제). 이 밖에도 친생부인의 소에 있어 제소권자를 처까지 확대하고 그 기간도 사유를 안 날부터 2년 내로 연장하였다 상속에 있어서 상당 기간 동거 하며 피상속인을 부양한 상속인에게 기여분이 인정되도록 하는(안 제1008조의 2) 등 조정하였다

알기 쉬운 호주제 폐지

호주제가 폐지되면 가족구성원 모두가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로 된다.

▶ 호주제가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가족제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러나, 호주제가 폐지되면 호주와 가족을 구분하던 법적 개념이 철폐되고 호주제로 인해 법적, 사회적으로 2차적 존재에 머물렀던 우리 사회의 어머니, 아내, 딸들인 여성의 인권이 회복된다 또한 수직적이고 차별적인 가족관계에서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관계 및 혼인관계로 변하게 될 것이다



가족의 범위가 넓어지며, 양성평등하게 규정된다.

▶ 현행 법에 의하면 호주를 기준으로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자 기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에 입적한 자를 가족으로 하지만, 법률이 시행되는 2008년 1월 1일부터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그리고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그 범위가 확대된다 따라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며느

리와 사위, 장인,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 처남, 처제까지 가족에 포함된다

또한 호주 대신 본인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양성평등하게 가족의 범위가 정해진다

자녀에게 아버지의 성(姓)과 본을 강제하지 않지만, 아버지의 성을 원칙으로 한다.

▶현행법상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강제하는 부성(父姓) 강제를 완화하였다 개정민법에 의하면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원칙으로 하되, 부모가 혼인신고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협의한 경우에는 어머니의 성을 따르게 된다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문제점이 있으나, 법적 강제성을 철폐하였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형제·자매간에 성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혼인신고시 아버지성 또는 어머니성으로 쓰기로 결정이 되면 그 부모에게서 출생한 자녀는 결정된 하나의 성을 쓰게 된다 따라서 형제자매간은 통일된 성을 쓰게 된다 처음에 아버지의 성을 쓰다가 중간에 어머니의 성으로 바꾸기는 불가능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만 성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혼인외의 자를 인지하여도 자녀는 아버지의 성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현행법상 어머니의 호적에 올리고 어머니의 성을 따르던 혼인외의 자를 아버지가 인지하게 되면 아버지의 호적으로 옮겨지고 성도 아버지

의 성을 따라야 했었으나, 개정민법에 의하면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자녀가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인지하기 전의 성과 본을 사용할 수 있다 현재 미혼모가 자녀를 키우다가 친아버지의 인지신고로 자녀의 호적이 옮겨지고 성이 바뀌던 불합리함을 제거하고 앞으로는 부모 협의로 어머니 성을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재혼가정의 자녀는 새아버지의 성을 쓸 수 있다.

▶현행법상 자녀는 반드시 친아버지의 성을 따르게 되어 재혼가정에서 아내의 전혼자녀는 새아버지와 성이 달라 학교생활 등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등 자녀복리의 저해요인이 되었다 개정민법이 시행되면 재혼부부는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여 자녀에게 새아버지의 성을 따르게 할 수 있다 또는 개정민법 제781조(자의 성과 본) 제6항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법원에 청구를 통해 자녀에게 새아버지의 성을 따르게 할 수 있다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는 친자로 공시된다.

▶혼인기간 1년 이상 된 재혼부부가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게 되면 그 자녀는 새아버지의 성을 따를 뿐만 아니라 발급되는 신분등록부에도 친자로 공시된다 신분등록부 원부에는 입양사실이 기재되지만 원부를 발급하는 일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엄격히 제한되므로 사생활이 보호된다 친양자제도의 적용을 받게 되는 자녀 나이는 15세 미만자이고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을 요건으로 하며 친양자로 되면 친생부모와는 법적으로 부모, 자식관계가 완전히 단절된다

입양제도를 개선하는 친양자제도가 도입된다.

▶ 친양자제도는 재혼가정 뿐만 아니라, 혼인기간 3년 이상 된 부부로서 입양하는 경우에도 해당된다 따라서 입양시설 등에서 자를 입양하는 경우에도 신분등록부에 친생자로 공시된다 새아버지의 성을 따를 수 있음은 물론이다 또한 이 경우에도 친생부모와는 법적으로 부모, 자식관계가 완전히 단절된다

부칙 제5조(친양자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입양된 자를 친양자로 하려는 자는 제908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할 수 있다

제908조의2(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① 친양자(親養子)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1. 3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친양자로 될 자가 15세 미만일 것
3.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다만, 부모의 친권이 상실되거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86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이 있을 것

성 변경의 가능성은 있으나,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개정민법에 의하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아버지, 어머니, 또는 자녀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바꿀 수 있게 된다 성을 변경할 여지는 인정되지만, 가정법원의 엄격한 판단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한 것이다 예를 들면 자녀의 복리에 해당하는 경우로는 친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해 자녀가 아버지의 성을 쓰기를 거부한 경우 등이 해당한다

호적 등 초본 대신 새로운 신분등록부가 사용된다.

▶ 호주제가 폐지되면 호주를 기준으로 하여 가별로 편제되었던 호적은 폐기된다 새로운 신분등록법에 의해 마련된 신분등록부가 호적 등, 초본을 대체한다 새로운 신분등록부에는 호주를 기록하는 난이 없어지고 호주 대신에 본인을 기준으로 하여 출생, 입양, 혼인, 이혼, 사망 등 출생부터 사망할 때까지의 변동사항이 모두 기록된다 또,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의 인적사항이 기록된다 다만 호주제 폐지의 법적 효력은 2008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므로 새로운 신분등록법 실시도 그와 같다

각 개인이 신분등록부의 주인이 된다.

▶ 호주제가 폐지되면 호주를 기준으로 한 호적대신에 각 개인을 기준으로 하여 개인 한사람 한사람마다 신분등록부가 편제된다 개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본적으로 검색이 가능하게 되고, 각 개인이 각자의 신분등록부의 주인이 된다



결혼하더라도 아내가 남편의 호적에 입적하는 대신에 자신의 신분등록부에 배우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할 뿐이며, 자녀 역시 아버지의 호적에 들어가는 대신에 자신의 신분등록부에 부모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된다

새로운 신분등록제에 의하여 다양한 가족형태를 수용하게 된다.

▶ 새로운 신분등록부에는 신분변동사항은 본인의 것만 기재되고, 부모 등 가족의 신분변동사항은 기재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부모의 이혼, 재혼 등 사실 여부가 기재되지 않고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호적등본 대신에 목적별 공부를 제출하게 된다.

▶ 상속관계 확인, 보험 연금 보상 등 수급자 확인, 기타 신원 확인을 위하여 제출하였던 호적등본 대신에 새로운 신분공시제에 의한 목적별 공부를 발급받아 제출하게 된다 신분등록원부를 제출하는 것은 법에 의

해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한하게 될 것이다 보통의 경우 목적별로 가족사항, 혼인사항 등 필요한 공부(公簿)를 발급받아 제출하게 된다

새로운 신분등록부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 새로운 신분등록부 원부에는 본인을 중심으로 하여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형제자매의 인적사항이 기재된다 따라서 신분등록부상으로 얼마든지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사촌 이상의 관계는 현행 호적에서도 제적부 확인을 거쳐야 하는 사항이었으며, 전산화된 새 신분등록부에서 단계별 검색을 거치면 가능하다

족보는 문중에서 계속 기록, 보관하면 된다.

▶ 족보는 문중의 가계(家系)를 기록하는 사적인 기록부이다 호주제가 폐지되고 새로운 신분등록부가 호적을 대체하더라도 족보와는 전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다 호주제를 폐지한 후에도 원하는 문중은 족보를 계속 기록, 보관하면 된다

호주제 폐지 운동의 과정

1953. 9. 법전편찬위원회, 가족법 초안 완성
1956. 8.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주도로 본격적인 가족법 개정운동 전개
1958. 2. 신민법 제정(1차 가족법 개정)
 <호주제 관련 개정 내용>
 (1) 호주권 약화
 - 호주권자의 가족의 혼인 입양 분가에 대한 동의권 폐지
 - 호주의 강제분가 규정
 (2) 호주상속과 재산상속의 분리 재산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서만 개시됨, 단 족보, 제구, 분묘 및 그 부속 재산은 예외로 함
1960. 1. 신민법 시행
1962. 가족법 개정 법정분가 (소가족제도를 법적으로 채택한 것으로, 차남 이하는 혼인과 동시에 분가)
1973. 범여성가족법개정추진회 결성(61개 단체), 가족법개정 10대 요강 발표
 가족법 개정요강 10대 항목
 1. 호주제도의 폐지
 2. 친족범위 결정에 있어서의 남녀평등



3. 동성동본불혼제도 폐지
4. 소유불분명한 부부재산에 대한 부부의 공유
5. 이혼배우자의 재산분배청구권
6. 협의이혼제도의 합리화
7. 부모의 친권공동행사
8. 적모서자관계와 계모자관계의 시정
9. 상속제도의 합리화
10. 유류분제도
1977. 12. 2차 가족법 개정
 ※범여성가족법개정추진회가 1975년 4월 9일 국회에 제출했던 가족법개정안 중 호주제폐지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개정되지 못함
1979. 1. 개정 가족법 시행
1982. 10. 8차 개헌
 1982. 10. 헌법 제34조 “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 신설
1984. 7. 가족법개정을 위한 여성 연합회 결성(회장· 이태영, 78개 단체)
1987. 10. 9차 개헌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에 의하여 차별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36조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성과 양성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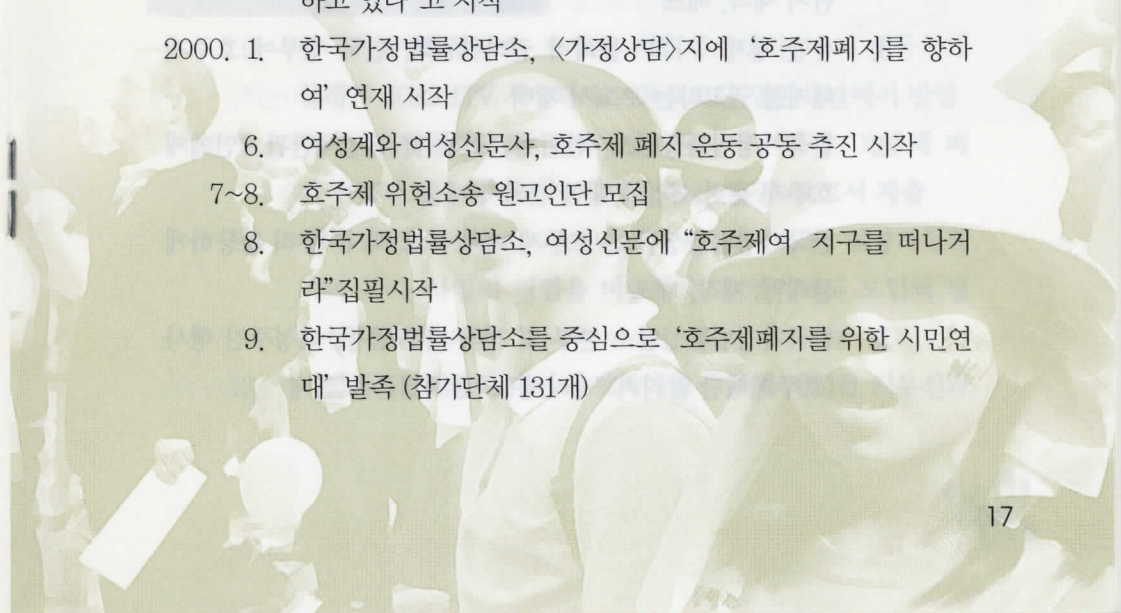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1989. 12. 3차 가족법개정
<호주제 관련 개정 내용>



- (1) 장남도 호주상속을 포기하고 분가를 할 수 있게 되었고 다른 집에 양자를 갈 수도 있게 됨.
- (2) 호주의 권리, 의무가 바뀜 가족에 대한 거소지정권과 가족 중 성년남자에 대해 강제로 분가시킬 권리, 가족 중 미성년자의 후견인이 될 권리가 삭제됨.
- (3) 호주와 가족 중 누구의 소유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 호주의 소유로 인정하던 규정을 고쳐 가족의 공동소유로 인정 함
- (4) 호주가 되는 장남이 다른 형제보다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는데 있어 자기 고유의 상속분보다 절반을 더 받던 특권이 없어짐.
- (5) 호주가 되면 당연히 상속받던 분묘에 속한 금양임야와 묘토, 족보, 제구 등은 호주아닌 다른 사람이 제사를 지내면 그 사람에게 계승되도록 함
- (6) 호주제도의 유지를 위해 인정되던 사후양자, 유언양자 제도 폐지
- (7) 일단 호주가 된 양자는 파양할 수 없도록 했던 규정 삭제
- (8) 호주와 가족 사이에 서로 부양의무를 지던 것을 삭제

1990. 1.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동성동본 피해자 신고센터” 개설
1991. 1. 개정 가족법 시행
1995. 4.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동성동본금혼규정에 대해 위헌소송 제기
1997. 7. 헌법재판소, 동성동본금혼규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
1999. 4.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한여의사회,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 공동주최, ‘현행 호주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개최
5.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호주제폐지운동본부 발족
7.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여성주간을 맞아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호주제폐지 서명운동 전개
11.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여성특별위원회와 공동협력사업으로 ‘호주제에 대한 국민 의식조사’ 발표
11. 유엔 인권이사회, 한국정부의 ‘국제인권규약’ 관련 ‘인권상황보고서’에 대한 심사결과 “호주제는 남성우위사회를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
2000. 1.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가정상담>지에 ‘호주제폐지를 향하여’ 연재 시작
6. 여성계와 여성신문사, 호주제 폐지 운동 공동 추진 시작
- 7~8. 호주제 위헌소송 원고인단 모집
8.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여성신문에 “호주제여 지구를 떠나거라” 집필시작
9.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중심으로 ‘호주제폐지를 위한 시민연대’ 발족 (참가단체 131개)



9. 호주제폐지 국회 청원(청원인 대표 박배희, 은방희, 지은희)
10. 25. 호주제폐지를위한시민연대 주최, “양성평등과 호주제폐지 그리고 그 대안” 토론회 개최
11.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연대, 호주제 폐지를 위한 위헌소송 제기
2001. 2.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호주제폐지를위한시민의모임 공동, 광화문 시네큐브에서 영화인 및 문화계 인사를 대상으로 호주제폐지 서명운동 전개
4.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과 서부지원, 헌법재판소에 호주제 위헌법률 심판 제청
4.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호주제폐지를 위한 거리 서명운동 전개
4.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호주제 바로 알기’ 전단지 제작, 배포
5. 유엔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위원회, 한국 정부에 호주제 폐지를 권고하는 보고서 채택
6.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9인에게 호주제 관련 사건에 대한 건의서 제출
7.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호주제 폐지 홍보 책자 ‘우리 평등하게 살래?!’ 제작, 배포
7.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본부 및 전국 지부 공동, 여성주간 행사 ‘호주제폐단 알리기’ 거리 홍보 및 서명운동 전개



8.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연대,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이 네티즌 대상으로 실시한 투표에서 “2001 여성” 단체 기관 부문에 선정
10.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연대, 여성신문사와 공동으로 국회의원들의 호주제에 관한 설문조사 실시
2002. 1.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민법개정안 공청회-친양자제도를 중심으로’ 개최
3. 호주제폐지를 위한 시민연대, “호주제에 대한 국회의원 의식조사 결과” 발표
5. 호주제폐지를 위한 시민연대, 2차 호주제 위헌소송 제기
7.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호주제 폐지 홍보영화 ‘우리 평등하게 살래?!’ 제작, 배포 및 소책자 발간
7.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김병후 박사 호주제폐지 홍보대사로 위촉
9.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호주제 폐지 홍보영화 ‘우리 평등하게 살래?!’ KBS 1TV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열린채널에서 방영
9.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국회여성위원회 용역과제 “호주제 폐지 전략과 호주제 폐지에 대비한 대안 연구” 보고서 제출
10.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라이너 프랑크 교수 초청 ‘입양가정과 자녀 복리-독일의 경험을 비추어 본 친양자제도 도입의 필요성’ 강연회 개최
12. 시민사회단체들이 대선 후보자에게 호주제 폐지를 최우선과



- 제로 요구, 각 당 대통령 후보는 호주제 폐지를 공약함
2003. 1.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국가인권위원회에 호주제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 표명 요청
2. 대통령직인수위, 호주제폐지를 '12대 국정과제'로 선정
3. 인권위 "현행 호주제 관련 규정은 위헌이며 인권 침해"라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
3.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새로운 결혼, 행복해야 한다-재혼가정의 안정과 복리' 심포지엄 개최
- 4.15~5. 15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호주제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4. 22. 호주제폐지를위한시민연대 국회 인권정책연구회, 호주제 폐지를위한 간담회 개최
5. 여성부, '호주제 폐지를 위한 특별기획단' 발족
호주제폐지를 위한 시민연대, '호주제 폐지 272' 발족
호주제폐지를 위한 시민연대, 호주제폐지를 내용으로 한 민법개정안 의원입법으로 발의(대표발의 이미경 의원)
- 5.~12.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전국 지부, 권역별 호주제폐지 심포지엄 개최
5. 27 호주제폐지를 위한 시민연대, '호주제 폐지 272' 발족
5. 27 호주제폐지를 위한 시민연대, 호주제폐지를 내용으로 한 민법개정안 의원입법으로 발의(대표발의 이미경 의원)
5.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이명숙 변호사를 제2대 호주제폐지 홍보대사로 위촉
6.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주최, 여성부 후원, 호주제 폐지 대안 심포지엄 '호주제 폐지, 우리는 평등이라 말한다 -더 나은

- 가족제도가 기다리고 있다' 개최
- 7 법무부, '가족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 발족 (곽배희 소장, 위원으로 활동)
9. 호주제폐지를 위한 시민연대 주최, '호주제 폐지 평등가족 실현 시민한마당' 개최
10.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주최, '비혼모에게 인권은 있는가 - 비혼모 가정의 법적권리와 복리' 개최
11. 법무부, 호주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민법개정안, 16대 국회에 제출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 여성단체 대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및 소속의원 면담, 민법개정안 통과 촉구
12.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전체 국회의원 대상으로 "의원 1:1 면담" 릴레이
2004. 3. 헌법재판소, 호주제 위헌법률심판 2차 공개 변론. 김상용 양현아 교수, 참고인 변론



6. 헌법재판소, 호주제 위헌법률심판 3차 공개 변론. 김준원 교수 참고인 변론
6. 법무부, 17대 국회에 호주제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민법중개정법률안 제출
7.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99의원 면담 릴레이 및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여성위원회 위원장,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열린우리당 제5정조위원장, 민주노동당 대표 등 면담, 호주제폐지 촉구
9.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호주제폐지에 대한 국회의원 입장 조사 - 전체 299명 의원 중 197명(65.9%)이 호주제폐지에 찬성
9. 호주제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민법중개정법률안(의원입법) 발의(이정숙의원 등 156인, 노회찬의원 등 10인)
- 10~12.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에게 호주제폐지촉구 편지보내기 운동 (매주 목요일, 호주제로 인한 피해 상담사례 및 호주제폐지 촉구 공문 발송)
11. 헌법재판소, 호주제 위헌법률심판 4차 공개 변론. 신희섭 박사 참고인 변론
1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최, 민법중개정법률안 공청회(곽배희 소장 토론 "호주제폐지와 21세기의 가족")
- 헌법재판소, 호주제위헌법률심판 최종 공개변론에서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곽배희 소장 이해관계인 변론



12. 2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2005년 2월 임시국회에서 민법 개정안 통과시키기로 호주제폐지에 합의
- 2005.1.~2. 법무부, '신분등록제도개선위원회' 발족 (곽배희 소장, 위원으로 활동)
1. 이은영 의원실 주최, '새로운 신분공시제에 대한 공청회'에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참가
2. 3. 헌법재판소, 호주제 '헌법불합치' 결정
2. 2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법개정안관련 새로운 신분공시안에 대한 공청회(곽배희 소장 토론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제도를 구현할 새로운 신분공시제를 도입 하여야 한다")
2. 2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법개정안(대안) 통과
3. 2. 국회 본회의, 민법개정안 통과, 호주제폐지 확정



民法 一部改正法律案

民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편제2장의 제목 “戶主와家族”을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으로 한다

제778조를 삭제한다

제77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780조를 삭제한다

제78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①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

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②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③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④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⑤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를 이루어 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⑥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제782조 내지 제789조를 삭제한다

제791조를 삭제한다

제793조 내지 제796조를 삭제한다

제80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제811조를 삭제한다

제813조중 “第811條및前條第2項”을 “제810조 및 제812조제2항”으로 한다

제814조제2항중 “前項”을 “제1항”으로, “所管戶籍吏에게”를 “본적지를 관할 하는 호적관서에”로 한다

제815조 본문중 “다음各號의”를 “다음 각호의 1의”로 하고, 동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제816조 각호외의 부분중 “다음各號의”를 “다음 각호의 1의”로 하고, 동조제1호중 “第807條乃至第811條”를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로 한다

제817조중 “8寸以內”를 “4촌 이내”로 한다

제8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18조(중혼의 취소청구권자) 혼인이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당사자 및 그 배우자, 직계존속,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가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제819조중 “成年”을 “20세”로 한다

제820조의 제목 “(同姓婚等에대한取消請求權의消滅)”을 “(근친혼의 취소청구권의 소멸)”로 하고, 동조중 “子를出生한”을 “포태(胞胎)한”으로 한다

제821조를 삭제한다

제8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24조의2(혼인의 취소와 자의 양육 등) 제837조 및 제837조의2의 규정은 혼인의 취소의 경우에 자의 양육책임과 면접교섭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26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837조제2항 및 제837조의2제2항중 “請求”를 각각 “청구 또는 직권”으로 한다

제845조중 “第811條의規定에違反하여再婚한女子”를 “재혼한 여자”로, “前條”를 “제844조”로 한다

제846조중 “夫는”을 “부부의 일방은”으로 한다

제8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47조(친생부인의 소) ①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訴)는 夫 또는 妻가 다른 일방 또는子を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848조제1항중 “夫”를 “夫 또는 妻”로, “否認의訴”를 “친생부인의 소”로 하고, 동조제2항중 “前項”을 “제1항”으로, “否認의訴”를 각각 “친생부인의 소”로, “1年內”를 “2년내”로 한다

제850조중 “夫”를 “夫 또는 妻”로, “否認의訴”를 “친생부인의 소”로 한다

제85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51조(부의 자 출생전 사망 등과 친생부인) 夫가 자의 출생전에 사망하거나 夫 또는 妻가 제847조제1항의 기간내에 사망한 때에는 夫 또는 妻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에 한하여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85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52조(친생부인권의 소멸) 자의 출생후에 친생자(親生子)임을 승인한 자는 다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853조를 삭제한다

제854조중 “前2條”를 “제852조”로 한다

제861조중 “法院의許可를얻어이를取消할수있다”를 “가정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로 한다

제864조중 “前2條”를 “제862조 및 제863조”로, “1年內”를 “2년내”로 한다

제86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64조의2(인지와 자의 양육책임 등) 제837조 및 제837조의2의 규정은 자가 인지된 경우에 자의 양육책임과 면접교섭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65조제2항중 “前項”을 “제1항”으로, “1年內”를 “2년내”로 한다

제869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후견인이 입양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86조중 “養子, 法定代理人 또는 同意權者”를 “양자 또는 동의권자”로 한다

제899조 본문중 “가름하여”를 “갈음하여”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후견인 또는 생가(生家)의 다른 직계존속이 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편제4장제2절에 제4관(제908조의2 내지 제908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관 친양자

제908조의2(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①친양자(親養子)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1. 3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친양자로 될 자가 15세 미만일 것

3.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다만, 부모의 친권이 상실되거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86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이 있을 것

②가정법원은 친양자로 될 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친(養親)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제908조의3(친양자 입양의 효력) ①친양자는 부부의 혼인중 출생자로 본다

②친양자의 입양전의 친족관계는 제908조의2제1항의 청구에 의한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한다. 다만,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 있어서의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08조의4(친양자 입양의 취소 등) ①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親生)의 부모 또는 모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908조의2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친양자 입양의 사실을 안 날부터 6월내에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883조 및 제884조의 규정은 친양자 입양에 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08조의5(친양자의 파양) ①양친, 친양자 친생의 부모 또는 모나 검사는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친양자의 파양(罷養)을 청구할 수 있다

1.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遺棄)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2.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悖倫)행위로 인하여 친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때

②제898조 및 제905조의 규정은 친양자의 파양에 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08조의6(준용규정) 제908조의2제2항의 규정은 친양자 입양의 취소 또는 제908조의5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파양의 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08조의7(친양자 입양의 취소 파양의 효력) ①친양자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때에는 친양자관계는 소멸하고 입양전의 친족관계는 부활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친양자 입양의 취소의 효력은 소급하지 아니한다

제908조의8(준용규정) 친양자에 관하여 이 관에 특별한 규정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양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0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중 “親權을 행사할 者를 정하고”를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로, “當事者의 請求에 의하여 家庭法院이 이를 정한다 親權者를 變更할 必要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를 “당사자는 가정법원에 그 지정을 청구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養父母)가 친권자가 된다

⑤가정법원은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⑥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910조중 “服從하는子에가름하여”를 “따르는 자에 같음하여”로 한다

제4장제3절제1관에 제9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12조(친권행사의 기준) 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921조제2항중 “服從하는”을 “따르는”으로 한다

제9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40조(후견인의 변경) ①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후견인의 친족이나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932조 내지 제935조에 규정된 후견인의 순위에 불구하고 4촌 이내의 친족 그 밖에 적합한 자를 후견인으로 정할 수 있다

제963조제1항중 “本人이나家에緣故있는者”를 “본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는 자”로 한다

제966조중 “直系血族, 戶主”를 “직계혈족”으로 한다

제968조중 “傍系血族 및 戶主”를 “방계혈족은”으로 한다

제4편제8장(제980조 내지 제982조 제984조 내지 제987조 제989조 및 제991조 내지 제995조)을 삭제한다

제1004조 본문중 “다음各號에”를 “다음 각호의 1에”로 하고, 동조제3호 내지 제5호중 “養子 기타 相續”을 각각 “상속”으로 한다

제1008조의2제1항중 “被相續人の財産의 유지 또는 増加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한 者(被相續人을 특별히 扶養한 者를 포함한다)”를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로 한다

제1030조중 “第1019條第1項”을 “제1019조제1항 또는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재산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03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상속재산중에서 남아있는 상속재산과 함께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하여 제1항의 변제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한 가액은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한다

제1038조의 제목 “(不當辨濟로因한責任)”을 “(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으로 하고, 동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상속인이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038조제2항중 “前項”을 “제1항 전단”으로 하고, 동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고 변제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038조제3항중 “前2項”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1057조 전단중 “前條第1項”을 “제1056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 후단중 “2年以上”을 “1년 이상”으로 한다

제1057조의2제1항 및 제2항중 “第1056條”를 각각 “제1057조”로 한다

제1058조제1항중 “前條의期間内に相續權을主張하는者가없는”을 “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분여(分與)되지 아니한”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前項”을 “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편 제2장(제778조 내지 제789조 및 제791조 내지 제796조), 제826조제3항 및 제4항, 제908조의2 내지 제908조의8, 제963조, 제966조, 제968조, 제4편제8장(제980조 내지 제982조, 제984조 내지 제987조, 제989조 및 제991조 내지 제

995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7조(제2항 및 제30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의 효력의 불소급) 이 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친생부인의 소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84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간이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내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847조제1항의 개정규정이 정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1997년 3
월 27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조(혼인의 무효 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 법 시행전의 혼인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후에는 혼인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5조(친양자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입양된 자를 친양자
로 하려는 자는 제908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는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할 수 있다

제6조(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에 의하여 기간이 변경된 경우에 이 법 시
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 법의 개정
규정과 종전의 규정중 그 기간이 장기인 규정을 적용한다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50-86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1-13 여성백인회관

전화 02-780-5688~9 / 782-3427 전송 02-780-0485 홈페이지 <http://www.lawhome.or.kr>